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3
----------	-----

2019년 3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송재혁 의원(찬성자 10명)
- 나. 제안일 : 2019년 1월 30일
- 다. 회부일 : 2019년 1월 31일
- 라. 상정일 :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2월 2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공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허브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공유허브의 성격을 “공유플랫폼”으로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플랫폼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아울러, 법령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의 예외로 하여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공유플랫폼”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시장이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5호의2 신설).
- 기본계획, 실태조사의 결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다. 기 타 : 입법예고(2019.2.8.~2019.2.15.)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안은 공유허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공유허브의 성격을 ‘공유플랫폼’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2012년 12월 동 조례 제정 이후 공유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자치구 공유촉진 공모사업”과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민간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공유촉진 공모사업 현황〉

민간 공모사업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
- 추진내용
 - 대 상 : 공유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 지원분야 : 사업초기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사업비
 - 지원한도 : 기업(단체별)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정혜택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 예산('19년) : 400백만원(경상보조)

자치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
 - 예산('19년) : 500백만원(경상보조)
 - 대상사업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및 학교시설 개방 등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지원

○ 현재, 공유단체 또는 기업으로 지정된 단체 등은 69개 단체이며, 최근 3년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2016년 18개, 2017년 18개, 2018년 9개)과 같음.

- 매년 추가로 공유기업이 지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개정안은 서울시 공유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공유기업 지정 현황〉

연도	연번	단체(기업)명	공유내용	비고
2018 년	1	블렉시트	집단지성 활용 개인 버킷리스트 공동실현 플랫폼	
	2	안테나	문화예술 창작자에게 부족한 전시,판매,교육공간 제공 플랫폼	
	3	쉐어잇	유휴학교시설에 대한 온오프라인 스쿨셰어링 사업 홍보	
	4	씨엘인포넷	GS25편의점 공간 활용 도서공유 캠페인 전개 및 홍보	
	5	아트립	공유축제 연계 하우스아트페어 (HOUSEARTFAIR)개최	
	6	프렌트립	공유축제 연계 액티비티 공간 구축 및 홍보	
	7	히든북	돈의문박물관 활용 야외도서관 운영	
	8	비움과 채움	돈의문박물관 활용 모모도서관 북스팟 운영	
	9	은평이품앗이	자치구 공유거점센터로써 공유강좌(지식/문화/관계) 운영	
	10	버스킹티비	공유축제 연계 버스킹라이징스타 등 행사 개최	
	11	에이유디	청각장애인 소통 지원 '쉐어타이핑' 공유 및 지원활동 전개	
	12	홍합밸리	돈의문박물관 활용 뮤직데이, 플리마켓 등 문화행사 개최	
2017 년	1	(주)데이그래피	인테리어 벽화 플랫폼 구축하여 청년 예술가와 자영업자를 연결 (재능공유), 신촌기차역 앞 청년커뮤니티 공간 공유	
	2	(주)에스폼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각종 문서서식 공유	
	3	쉐어잇(주)	학교 미사용 시간대 생활체육인이 학교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	
	4	(주)두꺼비하우징	빈 주택을 리모델링후 셰어하우스로 활용 등	
	5	아트립	서울내 공유숙박지를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및 페어공간으로 활용	
	6	(주)프렌트립	소셜 액티비티 공유 플랫폼 '프립'을 활용하여 사람과 장소를 연결	
	7	(주)한국주차공유서비스	주택 및 건물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공간을 공유	
	8	꿈꾸는 다락방	벼룩시장을 활용한 물품 및 보드게임 공유, 은평대학을 통한 재능 및 교육프로그램 공유	
	9	파릇한 절문이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텃밭을 조성하고 생산물 등을 공유	
2016 년	1	리베라빗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가구와 생활용품을 공유	
	2	어픽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용품 공유	
	3	아이랑놀기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전문가와 초보엄마를 연결	
	4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도시민박업주와 외국인관광객을 연결	

5	선립건축사사무소	빈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유	
6	원바이트	셰어하우스 공간 공급자와 수요자 연결	
7	세븐픽처스	예술작가와 카페를 연결하여 전시회 개최	
8	동네발전소협동조합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카페, 음식점, 회의장 등 공유	
9	지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대체숙박업 등 공유	
10	라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아이용품 등 중고물품 대여 중개	
11	루아흐	코워킹 공간을 창업가, 예비창업가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	
12	플래니토니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학교재를 학생 간 공유	
13	히든북	공원, 광장 등 유휴공간 활용하여 돛자리 도서관 개최	
14	다날쏘시오	각종 생활용품 개인간 대여 서비스	
15	허밍비	시니어의 재능공유를 통해 상품 판매 및 소셜다이닝 추진	
16	팀스퀘어	비즈니스 기회, 프로젝트 기회 등 연결	
17	씨엘인포넷	아이아웃, 아이책 등 아이용품 직거래 사이트 운영	
18	대안영사문화발전소아이공	대안 예술가 들을 위한 미디어아트 공간 공유 및 영상콘텐츠 공유	

〈민간 공유단체 등 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지원 실적		비고
			단체수	지원액	
2015년	240	232, 97%	14	232	
2016년	300	280, 93%	24	280	
2017년	260	193, 74%	13	193	
2018년	260	260, 100%	12	260	
2019년	400	-	-	-	

가. “공유플랫폼”의 정의 등(안 제2조제5호, 신설)

- 안 제2조제5호는 “공유플랫폼”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에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을 추가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공유허브’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공유플랫폼”이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p>
<p>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5의2.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p>

- 서울시 ‘공유허브’¹⁾는 2013년 6월, 시민들에게 공유문화 및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공유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유 서비스와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안 제2조제5호는 서울시 ‘공유허브’가 공유플랫폼으로서의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http://www.sharehub.kr/>

〈 공유허브 개요 〉

○ (목적)

-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공유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유 서비스와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이 직접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유플랫폼임

○ (기능)

- 공유지도(나눔카, 따릉이, 공유체육시설, 공구대여소 등 공공 공유시설 정보제공), 공유스토리(공유소식, 공유이벤트), 공유기업/단체(기관소개, 키워드 검색), 공유가이드(공유경제 설명, 공유서울 인증, 서울시 공유사업 소개 등)

○ 운영개시 : 2013. 6월~

○ 홈페이지(<https://sharehub.kr>(국, 영문)) 및 SNS운영(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 (평균 이용자 수(1일)) : 300명

○ (운영자) : '18.6~'19.2 : (주)에이티엔홀딩스 콘소시엄, '17.7~'18.3 : (주)쏘시오

○ (운영예산) 219,109천원

- 다만, 플랫폼²⁾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용어로,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

「2」 『운동』 역도에서, 바벨을 드는 사방 4미터의 각재로 만든 대.

「3」 『운동』 다이빙에서, 5~10미터 높이의 준비대를 이르는 말.

「4」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 또는 소프트웨어 프레임 워크의 하나. 구조,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따위를 포함한다.

「5」 『컴퓨터』 정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개방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 서비스.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³⁾’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지나치게 줄여 쓴말은 법령문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보통 수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령문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순화어로 선정된 용어가 있는바, 관련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서울시 행정순화어 (2008~2017)>

순번	순화대상용어	행정순화어	선정일자
364	플랫폼	기반, 장	2017.3.30.

나. 공유 촉진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안 제14조의2).

- 안 제14조의2는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제5조의2)과 공유 현황 실태조사(제5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목록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제5조의3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알기쉬운 법령기준(2015년 12월, 62쪽)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양하고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써야 할 때에는 부록의‘외래어와 외국어 표기’(338쪽)를 참조하여 쓴다.

- 현재 서울시 공유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공유허브’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일부는 이미 공개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시민들의 공유 참여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공유 정보에의 접근과 소통이 중요한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더 많은 공유정책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63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0일

발 의 자 : 송재혁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정환, 김제리, 봉양순,
오중석, 오한아, 이정인, 장상기,
전병주, 한기영 의원(10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공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허브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공유허브의 성격을 “공유플랫폼”으로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플랫폼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공유플랫폼”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시장이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5호의2 신설).

다. 기본계획, 실태조사의 결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플랫폼”이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제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제5조의3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공유플랫폼”이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u></p>
<p>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6. (생략)</p> <p><u><신 설></u></p>	<p>제5조(공유 촉진정책)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u>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u></p> <p>6.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제5조의3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